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미 법무부, AT&T사와TCI사의 합병 조건부 승인

미국 법무부는 지난 '98년 12월 30일 AT&T사와 Tele-Communications사(이하 TCI사)간에 체결된 480억불 규모의 합병에 대하여 양사는 향후 5년간 TCI사가 소유하고 있는 Sprint PCS사의 주식을 완전 양도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동 합병을 승인하였다.

AT&T사는 미국에서 약 9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한 휴대전화통신의 대기업이고, TCI사는 미국에서 제2위의 케이블TV 사업자로서 Sprint사의 휴대전화통신회사인 Sprint PCS사의 주식 약 23.5%를 소유하고 있다. AT&T사와 Sprint사는 미국 전역에서 휴대전화통신 네트워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동 합병에 대해 「과거 수년간에 걸쳐 휴대전화통신 서비스사업에서 경쟁이 이루어져 낮은 가격, 고품질의 서비스로서 수백만명의 신규가입자를 창출하였다. 이번에 합의한 화해협정은

휴대전화통신사업에 있어서 경쟁적인 시장활동을 둔화시키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계속해서 경쟁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도록 확보하는 데 있다」고 조엘 크라인 반 트러스트 국장은 언급하였다.

휴대전화통신은 기본적으로는 셀룰러폰사업자(휴대전화통신사업자)와 PCS 사업자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현재 약 6,000만명의 소비자가 가입하고 있으며 1998년 한해동안 약 300억불의 사용요금을 지불하였다.

동 화해조건에 의하여 당해회사는 본건 합병이 완료되기 전에 Sprint PCS사의 주식을 독립한 신탁자에게 이관하지 않으면 안 되며, 신탁자는 그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약 5년간의 기간을 주게 된다. 또한 이 화해협정은 주식의 양도가 완료될 때까지는 AT&T사는 Sprint사와 적극적으로 경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동 화해협정에는 Sprint PCS사의 주식양도에 의하여 Sprint사가 휴대전화통신 네트워크의 건설을 계속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증자하는 권리가 침해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AT&T사는 본사를 뉴욕에 두고 있으며, 1998년의 매출고는 휴대전화통신사업에서의 약 50억불을 포함하여 총 520억불이나 된다. TCI사는 콜로라도주 엔게로우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998년도 총 매출고는 약 75억불이 된다. 한편 Sprint PCS사는 미국 전국규모의 대규모 휴대통신사업자 중의 하나이며, 1998년 매출고는 약 9억7500만불이다.

상기 동의판결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트러스트국 전기통신 테스크웍스 주임 Donald J. Russell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당해 60일의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 법원은 동의판결안이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는 경우 동의판결을 하게 된다.

■ '98. 12. 30, 미 법무부 발표문

FTC, BP/AMOCO사 합병 주요소 양도 등을 조건으로 동의심결

British Petroleum사(이하 BP사)와 AMOCO사는 양사의 합병이 일부 석유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FTC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시설을 양도함으로써 30개 시장에 소재하는 1,600개소 이상의 주유소에서 손을 떼는 데 동의하였다. 당초에 제안된 화해협정에 의하면 BP사와 AMOCO사는 8개 시장에서 134개소의 주유소 및 9개소의 중계기지를 양도하기로 하였었다. 이에 추가하여 양사는 30개 시장에 소재하는 독립소매업자에게 그 주유소를 다른 시설로 넘기는 것을 인정키로 하였다.

「BP사와 AMOCO사의 합병은 대규모 사업자끼리 관련됨으로써 석유산업의 집중을 현저히 높일 수도 있지만, 양사의 사업활동에서는 경쟁을 위협할 만한 공통부분은 없다. 양사의 사업활동에서 중첩이 되는 것은 주로 미국 지방시장에서의 도·소매 분야이며, FTC는 양사의 협력을 얻어 소비자가 경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주유소 양도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하였다. 모든 산업에서 대규모 합병은 반트러스트국으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FTC는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합병심사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합병을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라고 비도후스키 위원장은 언급하였다.

BP사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석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원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 및 수송, 휘발유, 디젤연료, 제트연료, 기타의 석유제품의 정제, 중계와 판매, 그리고 석유화학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 중

합적 에너지회사이다. BP사는 BP 브랜드로 미국 동남부 및 중서부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서 휘발유의 중계기지 및 주유소를 통하여 공급·판매하고 있다.

AMOCO사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원유, 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탐사 및 생산하고 있는 종합석유화학회사이다. 이 회사는 원유, 휘발유, 제트원료, 디젤원료와 같은 석유제품을 정제 및 수송하고, 휘발유, 디젤연료, 기타의 석유제품을 중계·판매하고 있다. AMOCO사는 BP사와 같이 휘발유, 기타 석유제품의 미국내 대규모 생산자이다.

FTC에 의하여 양사의 사업활동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역을 조사함으로써 양사의 사업활동이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과 같은 사업분야 대부분에서, 그리고 석유화학생산의 분야에서는 특히 심하게 중복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합병에서 FTC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 많은 지방시장에서는 경쟁상의 우려가 있는 곳이 있었다.

심판개시 결정서에서는 본건 합병이 다음의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고 위반사실의 개요에서 지적하고 있다.

- (1) 미국 동부의 30개시 또는 주요 도시에서의 휘발유 도매부분
- (2) 9개소의 특정지역시장에서 휘발유, 기타의 석유제품의 중계수송시장

심판개시 결정서는 주요 도시의 9개 지역에서 휘발유, 기타 석유제품

의 중계, 판매는 본건 합병에 의하여 집중이 현저히 진행되고, 당해시장에 참여이 곤란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본건 동의협정안의 성명은 가까운 장래에 관보에 공시되며, 60일간의 공시(Public statement) 후 FTC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주) 동의협정은 화해만을 목적으로 하며, 범위반의 인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님. FTC가 최종적으로 동의명령을 할 때에는 당해명령은 장래의 위반에 관하여는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다. 이러한 명령위반에 대해서는 11,000불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 '98. 12. 30, FTC 발표문

**플로리다주 내과의사들,
위법한 공동협상 중지하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

플로리다주 탬파에 소재하고 있는 일단의 일반내과의사 및 혈관계 내과의사들은, 법무부와의 화해안에 따라 의료보험회사들이 보험수가 인상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위법한 공동계약협상이나 보이콧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다.

1월 26일 탬파 지역 미국연방지방 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의 소장에서는, 29명의 일반내과의사 및 혈관계 내과의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인 공인내과의·전문 의 연합(FCCSI)과 테네시주 녹스빌에 소재하고 있는 회계 및 컨설팅회사인 Pershing Yoakley and Associates, P.C.(PYA)가 위에서 열거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되었다. 당해 화해안이 법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 이번 소송은 해결되게 된다.

FCSSI는 의료보험회사로부터 보험 수가를 올려 받으려는 목적으로 내과 의사들이 설립하였다. FCSSI의 회원인 의사들은 탬파 지역의 5개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내과의사 및 혈관계 내과의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6년에 FCSSI는 이들 병원의 일반내과수술 및 혈관계 수술의 87%를 시행하였다.

"1월 26일의 조치는 내과 의사들의 위법한 공동협상 및 보이콧을 중지시키려는 우리의 결의를 입증하고 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을 인상시키는 위법한 보이콧을 중지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법무부 반트러스트 국장인 Joel I. Klein은 말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위법한 공동협상 노력의 결과 FCSSI 회원 의사들의 추정된 연수입은 평균 14,097달러였다고 밝혔다.

1월 26일의 소장에서는 FCSSI를 대리하여 보험수가 인상을 협상하기 위해 PYA사가 의료보험회사들에 접근하였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또한 PYA사는 만일 의료보험회사들이 PYA사가 제안한 계약내용으로 FCSSI 내과 의사들과 계약하지 않으면 이 의사들은 계약을 종료하고 동 의료보험회사의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지하였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PYA사는 28명의 FCSSI 소속 내과 의사들이 의료보험회사와의 계약을 종료한 이후 보험수가 인상을 얻어내

는 데 성공했다.

1998년 8월에 법무부는 델라웨어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사들 거의 전부에 대한 협상대리인이 이와 유사한 공동협상 및 보이콧 활동을 조직하였다고 하여 그를 기소한 바 있다.

동의명령안은 반트러스트법에 따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무부의 성명과 함께 연방관보에 게재되었다.

■ '99. 1. 26. 미국 법무부 보도

**Citicorp Services Inc.,
Transactive Corporation의
EBT 서비스자산 취득 포기**

미국 법무부는 1월 29일, Citicorp Services Inc.사가 Transactive Corporation의 사회보장급부 전자이체(EBT) 시스템 사업부문을 취득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Citicorp사가 당해 계획을 포기함에 따라 이의 저지를 위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당해 결정은 Citicorp사가 Transactive사의 모회사인 GTECH사와 체결한 바 EBT 시스템 사업부문 취득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결정에 뒤이은 것이다.

EBT 서비스는 주 및 지방 행정기관들이 사회보장급부를 받는 수백만의 미국인들에게 식비 및 현금급부를 제공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EBT 시스템은 식권이나 수표와 같은 종이 사용을 없애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이고, 서비스 제공비용도 절감하게 된

다. 연방법에 따라 모든 주들은 2002년 이전까지 식비 제공을 위해 EBT 시스템 이용을 개시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우리는 Citicorp사의 당해 취득 포기를 환영한다. 당해 취득계획이 시행되면 EBT 서비스 제공업체들간의 경쟁은 상당히 감소되었을 것이다. 소비자들 - 주 및 지방 행정기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보장급부를 받는 사람들 - 은 더 유리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경쟁 지속의 이익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I. Klein은 언급하였다.

1998년 7월 델라웨어 소재 미국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당해 법무부의 소송에서는 당해 취득계획이 시행되면 EBT 계약에 대한 경쟁이 제거될 것이며, 이는 주 및 지방 행정기관에 대하여 더 높은 가격 및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또한 당해 취득은 궁극적으로 사회보장급부를 받는 자들에게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되었다.

Citicorp사의 결정과 당해 소송 취하의 결과, 급부처리 시스템을 포함하여 Transactive사의 자산은 Transactive사 스스로가, 또는 이 시장에서 Citicorp사의 전국적인 시장지배적 지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기타 입찰업체가 이들 자산을 매입 내지 라이선스 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Citigroup, Inc.의 자회사인 Citicorp사는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 제1위의 EBT 서비스 제공업체이며

29개 주와 계약을 맺고 있는 주요 공급업체이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소재하고 있는 Transactive사는 당해 취득 계획에 대한 합의가 공표되기 이전까지 Citicorp사의 주요 경쟁업체였으며 3개 주에의 주요 공급업체였다.

■ '99. 1. 29, 미국 법무부 보도

미 법무부, 영화 스튜디오와 극장들간의 연계 조사

법무부는 영화를 제작 및 배급하는 할리웃 스튜디오들과 이들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체인간의 복잡한 연계에 대하여 광범한 예비조사를 개시하였다.

주요 스튜디오들 및 최소한 2개 주요 극장 체인에 대하여 발부된 민사조사요구서는 정부가 영화상영 산업에서의 거래제한 및 독점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당해 문서는 또한 배급업체들이 극장에 영화를 배급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50년 된 동의명령의 위반이 있었는지를 엄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언명하고 있다.

법무부 대변인은 법무부가 "영화 배급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민사조사요구서는 소환장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당해 민사조사요구서는 2월 4일 늦게 할리웃의 주요 영화 배급업체들에 전달되었는데, 이에에는 월트 디즈니사, Viacom Inc.의 파라마운트사, 소니사,

News Corp.의 20세기 폭스사, Seagram Co.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사, Time Warner Inc.의 워너 브러더스사, 그리고 MGM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스튜디오 중 어느 업체도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으며 당해 조사사실은 Variety지에 보도되었다.

미 전역의 최대 극장 체인 중 두 업체, 즉 Regal Cinemas Inc. 및 Loews Cineplex Entertainment Corp.는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AMC Entertainment Inc.나 United Artists와 같은 다른 대형 극장 체인들은 법무부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극장 체인이 할리웃 영화사들이 배급하는 영화들에 대하여 공정하게 상영할 기회가 있었는가이다. 정부는 영화의 극장상영 예약과 관련된 광범한 행위에 관한 정보 및 문서들을 요구하고 있다. 관심대상은 한 극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 한 영화를 배타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독점권(clearances)"의 부여이다.

민사조사요구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극장들이 개봉영화를 상영할 권리가 한 편 이상의 다른 영화를 상영하겠다는 합의에 구속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계상영 예약(block booking)"으로 알려져 있는 이러한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정부는 또한 배급업체들이 극장들의 입장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스튜디오 내 관계자들은 2월 5일, 당해 조사를 개시하여 동 산업에 충

격을 준 정부의 동기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다수 관계자들은 이것이 소규모 극장 체인 운영자들의 이익제기에 대응한 것이리라 추측하였는데, 이 소규모 극장 체인들은 최근 극장산업의 통합 과정에서 대형 체인들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기업매수 전문기업들인 Kohlberg Kravis Roberts & Co.와 Hicks, Muse, Tate & Furst사는 자신들의 극장 지분을 통합하여 Regal사를 단시일 내에 세계 최대의 영화 체인으로 만들었다.

할리웃의 다른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가 최근 영화를 제작하고 극장도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재등장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스튜디오들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극장들을 매각하도록 한 1948년의 동의명령에 의해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의 출범 이래 정부는 단일한 법인체가 영화제작과 극장소유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Loews Cineplex사는 소니사가 51%의 지분을, 유니버설사가 2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Sumner Redstone의 National Amusements Inc.는 미국에서 극장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Redstone씨의 Viacom사 지분 67%를 대표하고 있다.

수십년이 흐르면서 당해 동의명령은 동 산업의 관행에 비추어 일치하지 않는 청사진임이 입증되었다. 이는 모든 스튜디오 및 상영업체에 적

용된 적이 없었으며, 현재의 대형 복합영화판과는 거리가 먼 단일 스크린 시대에 고안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해 동의명령의 일부분은 아직도 당해 산업의 지침이 되고 있는데, 특히 스튜디오들은 자사의 영화들을 한 번에 하나씩 상영계약하도록, 그것도 극장별로 하도록 한 요건이 그러하다. 이는 스튜디오들이 자사제작의 영화를 전체를 묶어 한 극장 체인과 집단적으로 상영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산업의 관계자들은 일부 스튜디오 및 극장 체인이 비공식적으로 연계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랫동안 의심하여 왔다. 법무부의 조사는 "상영업체와 배급업체 간에 어떠한 '관계' 내지 '결탁'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

■ '99. 2. 8, The Wall Street Journal

E U

유럽위원회, 유로화 거래 수수료 관련 담합 혐의로 8개 은행 수색

유럽위원회 조사관들은 2월 16일, 새로운 단일 유럽통화인 유로화의 거래와 관련한 수수료를 고정하기로 담합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8개 주요 유럽계 은행들을 급습하였다.

이러한 기습 수색은 15개국으로 구성된 EU의 집행부격인 동 위원회가 은행들이 환차손 위험의 소멸로 발생하는 비용절감분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이들을 사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다.

"1월 이후 은행들이 유로화 거래에 적용될 수수료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어 왔다. 우리는 은행들 간에 경쟁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오늘의 수색이 어떤 성과를 올릴 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경쟁담당위원인 Karel Van Miert는 2월 16일 언급하였다.

이번 수색 대상은 독일의 Deutsche Bank 및 Dresdner Bank, 프랑스의 Société Générale과 Crédit Agricole, 이탈리아의 Banca Commerciale Italiana와 Cariplo, 그리고 스페인의 Banco Bilbao 및 Argentaria이다. Van Miert는 다른 회원국의 여타 은행들도 똑같은 혐의가 있지만 동 위원회는 수색을 확대할 인적·물적 자원이 없다고 하였다.

1월 1일 유로화가 출범한 이후 브뤼셀에서는 소비자 및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을 것이라는 우려가 집중하여 왔다. 동 위원회는 특히 은행들이 유로화 관련 환전수수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단일통화가 갖다고 선전하는 장점, 즉 유로화가 여행객들 및 국경을 넘어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비용 감소를 의미할 것이라는 점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염려하고 있다.

Société Générale은 2월 16일 "우리

는 당해 조사가 가장 중요한 유럽 은행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서 어느 정도 영예라고도 생각한다. 우선 조사를 받은 뒤 그 결과가 어떠한 지 지켜볼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동 은행은 브뤼셀이 유로화의 느린 정착속도에 대해 은행들을 트집잡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덧붙였으며, 500만 고객들 중 단지 50,000명만이 유로화로 표기된 수표책을 요청하였음을 지적하였다.

Argentaria는 동 은행이 유로화 환전수수료를 적용하는 데 있어 EU, 스페인 정부 및 스페인 중앙은행의 규범 모두를 준수하였다고 하였다.

Van Miert는 유럽의회에서 개최된 은행 수수료 관련 청문회 때에 당해 수색 사실을 공표하였다. 유럽의회의 금융문제 소위원회 위원장인 Christa Randzio-Plath는 최근 스트라스부르를 방문한 40명의 독일 방문객이 독일 마르크화를 프랑스 프랑으로 환전할 때 지불한 수수료가 경우에 따라 15가지로 달리 매겨졌음을 발견하였

다. 그러나 유럽은행연합회의 사무총장인 Nikolaus Böcke는 환차손 위험은 환전과 관련된 여러 비용 중 일부일 뿐이라고 하였다.

■ '99. 2. 17, Financial Times

일본

공취위, 수도관 카르텔 관련 3개 회사를 형사고발

수도관 등에 사용되는 「직선 연성 주철관」을 둘러싼 카르텔사건에서 공정취인위원회는 2월 4일, 독점금지법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보타, 쿠리모토(栗本) 철공소, 일본주철관 3개사를 검찰총장에 형사고발하였다. 이 분야를 과점하고 있는 3개사가 수량과 가격을 조정하는 점유율 협정을 맺음으로써 사실상 전국적 규모 경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였다는 혐의가 포착되어 있다. 점유율 협정에 대하여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공취위는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수도사업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카르텔이라는 점 및 시장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형사벌에 상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취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1996~1997년도에 영업담당자들이 매년 회합을 열어 판매점유율의 배분을 합의, 영업활동을 상호간에 구속하였다는 혐의가 있다. 1997년도의 직선 연성 주철관의 시장규모는 약 1,350억 엔이다.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당해연도의 판매점유율은 판매액 기준으로 구보타사가 62~65%, 쿠리모토사가 25~27%, 일본주철관이 10% 정도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공취위가 고발한 것은 주로 담합사건이었다. 점유율 협정을 소추대상으로 한 것은 1년 내내 시장을 지배하는 행위의 악질성을 중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취위는 1998년 5월 3개사 등을 현장조사하였고, 심사를 거쳐 동경고검과 고발을 위한 협의를 반복하여 왔다. 공취위는 고발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을 염두에 두고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 '99. 2. 4,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일본햄에 배제권고 - 재판매가격구속으로 독점법 위반

공정취인위원회는 2월 5일, 대형 식육 가공업체인 일본햄(오사카시)이 슈퍼마켓 및 식육점 등 소매점에서의 소시지 재판매가격을 구속하였다고 하여 동 회사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위반(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배제권고를 하였다.

공취위에 따르면 가격구속의 대상이 된 것은 일본햄의 주력상품인 고급 비엔나 소시지 「샤우엣센」이다. 조사에 따르면 동 회사는 가격 저하에 따른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1994년 1월경부터 작년 11월까지의 사이에 주머니 포장형 상품(내용량 160그램)의 최저소매가격을 318엔, 염가판매의 경우에는 298엔 등으로 「희망판매가격」을 세세히 지정, 이 이하의

가격으로 특매세일 등을 하지 않도록 자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담당을 통해 소매점에 요청, 약 54,000여 개의 점포에서 이를 지키도록 하였다.

동 회사는 희망판매가격을 지키지 않는 소매업자에 대하여서는 출하 제한이나 도매가격 인상 등을 통하여 이익률을 낮추는 수법으로 대항하였고, 소매업자가 할인판매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영업담당자들이 손님을 가짐하여 저렴하게 팔리고 있는 샤우엣센을 점포 앞에서 모두 사들인 후 추가주문에 응하지 않는 등의 제재를 가하여 왔다. 또한 샤우엣센을 할인 판매하고자 하는 대형 슈퍼마켓 등에 대하여서는 지정가격의 준수 강제가 어렵기 때문에, 간단히 단가비교를 할 수 없도록 표준상품의 규격과는 내용량 및 포장이 다른 「전용품」 샤우엣센을 공급, 주변의 소매점에 가격할인이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동 회사는 직판분뿐만 아니라 계열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도 철저히 구속하여 왔기 때문에, 공취위는 「지정가격은 (소매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을 구속하지 않도록 할 것을 종업원 및 판매사 임원·종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요구하였다. 동 회사는 작년 11월 이후 가격구속을 중지한 상태이다.

샤우엣센의 1997년도의 매출액은 약 254억엔에 달하며, 일본농림규격으로 고급 소시지시장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 '99. 2. 6, 아사히신문 &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도로도장업체
현장조사
- 공단발주공사 담합 관련**

일본도로공단이 발주하는 교각 등의 도장공사를 둘러싸고 담합을 반복하였다는 혐의가 있다고 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2월 17일,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 혐의로 도쿄 및 오사카의 도장업체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장조사를 받은 업체는 켄소(建築)공업(본사 도쿄) 등으로, 모든 업체가 도장업체 약 300개사로 구성된 임의단체인 「일본도장기술연구회」의 회원사들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공단은 매년 철제 교각 등의 구조물의 도장을 새로이 하는 유지개량공사를 10개사의 지명경쟁입찰로 발주하고 있으며, 입찰은 지역별로 나누어 행하여지고 있다. 1997년도의 발주액은 약 80억엔이다.

도장업체들은 이러한 입찰을 둘러싸고 대규모 공사를 중심으로 낙찰사 및 낙찰가격을 조정하여 왔다는 혐의가 있다. 「연구회」가 담합의 무대로 되었다는 의혹도 있다.

■ '99. 2. 17, 일본경제신문

**일본 통산성, 신리운드시
개발도상국의 경쟁정책
강화 제안**

통산성은 2000년부터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신리운드에 관하여, 경쟁정책분야에서의 일본제안의 골자를 확정하였다. 개발도상국에 독점금지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외에 기업결합에 관한 각국의 심사절차의 통일 등 새로운 다자간 규칙 설정을 주장할 계획이다. 공정한 기업경쟁을 보증하는 시장감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개발도상국에서 외국기업이 활동하기 쉽도록 하고, 아시아 통화위기 이래 정체되고 있는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 성의 안에서는 WTO의 전 참가국에 독점금지법의 제정을 의무화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쟁정책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 그 중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의 금지라는 원칙을 WTO에서 정하여 공평한 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가격카르텔, 담합, 시장분할, 생산제한 등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각국마다 상당히 다른 독금법의 적용제외에 대하여서도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업결합에서는 중점심사의 대상과 절차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의해 국제적인 M&A(기업결합 및 취득)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미국 및 개도국은 경쟁정책이 자유화교섭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소극적인 반면 유럽연합은 적극적으로, 통산성은 4월말의 4차 통상회의에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 '99. 2. 18, 일본경제신문

영 국

**RAC/CENDANT 기업결합,
영국 경쟁당국의 반대로 좌절**

미국의 호텔, 렌터카 및 부동산 회사인 Cendant사는 Royal Automobile Club사(이하 RAC사)의 자동차부문 취득계획을 포기하였다고 2월 4일 발표하였는데, 이는 영국 경쟁당국이 당해 기업결합의 성사를 위해 Cendant사는 자동차고장 응급수리 서비스부문인 Green Flag을 매각하여야 한다고 한 이후 나온 것이다.

RAC사는 당해 결정이 발표된 후 동 회사는 다른 인수 희망업체들과의 논의를 계속하는 한편 고장 응급수리 서비스부문의 상장도 준비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동 서비스부문은 영국에서 5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사회의 재편 이후 2월 4일 RAC Holdings사의 회장으로 취임한 Michael Angus경은 상장이 가능한 선택방안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사회는 주주들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자동차서비스부문의 공정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하였다.

Cendant사의 매수 철회 결정은 RAC사의 12,000명의 정회원들에게는 타격이 될 것인데, 이들은 4억5,000만 파운드(7억3,000만달러) 규모의 RAC Motoring Services 매각 진행을 의결

한 뒤 각각 33,000파운드(54,000달러)의 순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당해 기업결합 계획은 불공정경쟁의 우려 속에 통상산업부 장관이었던 Peter Mandelson에 의해 작년 하반기에 독점·기업결합위원회(MMC)에 회부되었다.

2월 4일, 경쟁·소비자부 장관인 Kim Howells는 Cendant사가 6개월 내의 Green Flag의 매각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당해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청장에 의해 저지될 것이라고 하였다.

Howells 장관은 영국 자동차고장 응급수리 서비스 시장에서 제3위의 업체인 Green Flag를 "중요한 경쟁업체"라는 점에 대해 MMC와 의견을 같이한다고 하였으며, 동 업체가 독립성을 잃게 된다면 이는 "심각하게 경쟁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RAC사는 영국의 피보험차량 고장 수리 서비스 시장에서 Automobile Association사에 뒤이어 제2위의 업체이며 시장점유율은 29%이다. 그 외의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3.5%를 넘지 않으며, MMC는 이 시장에 대하여 "고집중상태"라고 하였다.

Cendant사는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앞으로 Green Flag를 RAC사 및 동 부문의 기타 업체들과 "활발히 경쟁하는 업체"로 육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동 그룹은 당해 취득을 위해 할당하였던 자금을 부채 감축 및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99. 2. 4, Financial Times

기 타

인도네시아, 최초의 독금법 제정

인도네시아 국회는 2월 18일, 인도네시아 최초의 독점금지법을 통과시켰다. 1998년 5월까지 30년 이상에 걸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독재하에서 수하르토의 일족 및 측근인 중국인 실업가가 경영하는 재벌이 여러 분야에서 경제이익을 독점한 것을 반성,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함이다. 한편 중국계 재벌들로부터는 「대기업의 해체를 노리는 중소기업 우대책의 일환」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이 법은 공정한 경쟁에 의한 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1개사 단독으로 50%, 2~3개사를 합쳐 75%를 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감독의 대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에 의한 기업지배로 독점체제를 고착화하는 것도 배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독립기관인 「경쟁감시위원회」가 기업활동을 감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00억루피아의 벌금이나 6개월의 금고형이 과하여진다.

이 법은 하비비 대통령이 서명하고 1년 후에 발효, 반년 후에 시행된다.

■ '99. 2. 19, 일본경제신문